

코엑스 서비스협력업체 운영 매뉴얼



2022. 9.

홀매니저실

CONTENTS

1. 서비스협력업체 운영	4
*목적 / 서비스협력업체 선정(등록) / 현장대리인 제도	
2. 안전관리 교육	6
3. 안전관리부분 평가제도 시행	6
4. 작업신고절차	7
*온라인 작업신고 / 승인절차 / 제출서류	
5. 작업준수사항(공통)	9
*일반작업 / 안전사항 / 흡연금지 / 업체의 방화관리 책임 / 폐기물 / 전시장 출입 /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6. 전시디자인설치	11
*기본 사항 / 천장공사 / 시설물의 높이 제한 / 복층공사 / 통로 확보 / 로비공사 / 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 제한 / 조립부스공사(트러스, 블록 및 시스템 이와 유사한 공사) / 목공사 / 유리공사 / 조경공사, 조형물공사 / 시멘트공사 / 중량물공사 / 기타	
7. 전기시설	18
*기본 사항 / 전시행사 시 / 전시철거 시	
8. 카펫 / 파이텍스	20
9. 급배수, 압축공기, 물 공사	20
*기본 사항 / 전시행사 시	
10. 경비	22
*근무요령 /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11. 철거	24
12. 지게차	25
13. 리깅	25
14. 광고사인물	26

15. 가구비품	26
16. 구조계산	27
첨부)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28

1. 서비스협력업체 운영

1) 목적

- ① 안전사고 예방 및 전시장 시설 보호
- ② 효율적 현장 운영, 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고객 만족도 제고

2) 서비스협력업체 선정(등록)

코엑스는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성, 해체 및 복구 등을 수행할 다음 각 호의 서비스협력업체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전시장시설운영규정 제13조)

- ① 전시디자인설치업체
- ② 전기시설업체
- ③ 가구 및 비품 임대업체
- ④ 운수통관업체
- ⑤ 카펫 및 파이텍스 설치업체
- ⑥ 철거업체
- ⑦ 급배수업체
- ⑧ 경비업체
- ⑨ 지게차운영업체
- ⑩ 등록시스템업체
- ⑪ 매표대행업체
- ⑫ 광고사인물업체
- ⑬ 리깅업체
- ⑭ 조립목공판넬업체
- ⑮ 구조해석
- ⑯ 기타 코엑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업체

3) 현장대리인 제도

- ① 해당업종(6개 업종): 전시디자인설치, 전기시설, 조립식목공패널, 광고시설물, 급배수/압축공기, 리깅 업종
- ② 현장대리인은 준비기간 중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통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작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문전시장 운영규정 및 안전관리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 ③ 업종별로 현장대리인계 제출
 - * 제출서류: 현장대리인계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포함), 재직증명서 1부, 4대사회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작업신고 신청 해당월 기준) 증명서 1부
- ④ 현장대리인 자격조건 (아래 항목 충족하는 자)
 - * 입사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직원 (대표자가 현장대리인일 경우 제외)
 - ※ 동종업계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임직원
(6개월 이상 연속 경력증명서 제출)
 - * 건축분야, 전기, 기계설비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임직원
- ⑤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
 - * 전시장차: 목공부스 3개업체당 1인 / 시스템부스 5개업체당 1인
 - * 전기시설: 10개 업체당 / 1인
 - ※ 간선 시공 업체 현장대리인은 작업신고 시 자격증 필히 첨부
 - * 현장대리인은 각 공사 부스별 개별 책임제로 공사 부스 당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1명씩만 선임
 - * 공사 현장이 1, 3층으로 층이 다른 경우에는 각 층별 현장대리인을 각각 선임
(기본부스 업체 층별 현장대리인 각각 선임)

2. 안전관리 교육

- ① 대상: 코엑스 전시장을 출입,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등록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자
- ② 교육일정: 별도공지(연간 정기교육 1~2회, 업종별 간담회 1회 이상)
 - * 코엑스 전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업체는 코엑스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및 수시 업종별 간담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 현장대리인이나 현장대리인 선임 예정자는 코엑스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상기 안전관리 교육은 온라인교육 및 전시장 운영관련자료(시설운영규정 및 협력업체 운영매뉴얼)로 대체될 수도 있다.
- ④ 안전교육 내용
 - * Coex 시설 및 현황 안내
 - * 전시장 부스 공사 진행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공지
 - * 온라인 작업신고서 제출 및 현장대리인 선임 방법 안내
 - * 안전교육 참석 및 안전관리 준수 사항 등
 - *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 ⑤ 교육 불참 업체 제재 사항
 - * 정기 안전교육, 업종별 간담회 불참 업체는 홀매니저실에서 확인서 임의로 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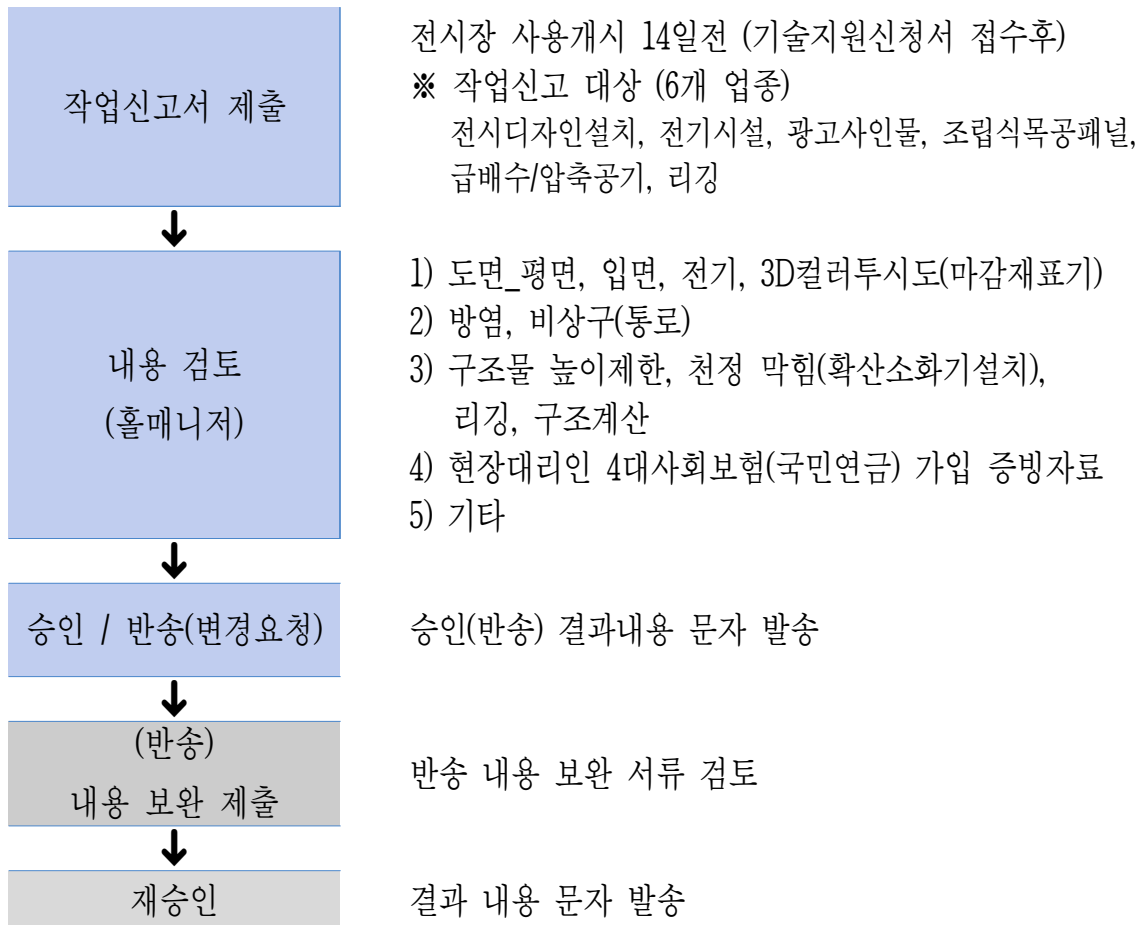
3. 안전관리부분 평가제도 시행

- ① 평가대상: 코엑스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된 모든 업체
- ② 평가시기: 연중 시행 (전 업종 / 각 항목 위반점수 합산 누적 적용)
- ③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평가 세부기준
(불임 업종별 위반사항 세부기준표 참조)
- ④ 위반사항 발생 시 처분 절차 (출입정지 사유 발생 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 * 확인서(1~2점): 전시장 운영과 관련, 지켜야 할 기본사항 미 준수 등
 - * 경고(3점): 누적 점수 3점 또는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한 경우
 - * 출입정지 6개월(4점): 누적점수 4점 또는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안전사고 등 발생

- * 등록제한 1년(5점): 누적점수 5점 또는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 * 등록취소(등록제한3년): 명의대여로 적발되어 사실적, 객관적 자료에 의한 명의대여가 확인, 확정된 업체는 확정즉시 등록 취소됨과 동시에 3년간 등록제한
- * 위반 누적점수 4~5점으로 출입정지 6개월~1년 사유 발생 시에는 심의 없이 즉시 출입정지를 시행(내용증명 우편 통보)

4. 작업신고 절차

1) 온라인 작업신고



2) 승인절차

- ① 코엑스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작업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승인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코엑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나 변경하고자 하는 시공업체는 변경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코엑스가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경우 참가업체 부스의 전시작동용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 ①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로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온라인 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신고 대상 (6개 업종): 전시디자인설치, 전기시설, 광고사인물, 조립식목공패널, 급배수/압축공기, 리깅

② 온라인작업신고 제출 서류

업종별	작업신고 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현장대리인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가입 증빙 자료	작업신고 해당월
전시장치	1)시공부스 도면 각1부 - 3D 컬러투시도(재료표기) - 평면도, 입면도 - 전기도 *확산소화기 위치, 수량_해당업체 - 급배수 바닥 도면 *급배수 사용 목공/시스템 바닥 시공업체 *급배수 수량 및 중간 점검구 표기도면(해당업체) 2)방염필증 - 선방염일 경우: 방염성능검사결과 통보서 (목공, 실사천, 카펫, 파이텍스, 커튼류, 도배지 등) - 후방염일 경우: 강남소방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	후방염(투명 방염)사유 기재

	성능검사의뢰서/성적서(목공만 해당) 3)구조검토계산서(감리보고서)	
전기시설	1)자격증 사본 2)작업신고서, 현장대리인계 각1부 3)간선 도면(공식 시공 업체 필수)	
급배수	1)작업신고서 2)급배수설치 도면 1부	
광고사인물	1)작업신고서 2)광고사인물 설치 시안 (각 홀별 설치위치 표기 도면) 각1부	
리깅	1)작업신고서 2)리깅 구조물 하중 표시 도면 1부. 3)구조계산서 필히 제출	
조립식목공 패널	1)시공부스 도면 각1부 - 3D 컬러투시도(재료표기), 평면도, 입면도, 전기도 - 부스 배치도면 2)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선방염) 또는 강남소방서 방염성능검사의뢰서/성적서(후방염)	

③ 오프라인 제출서류

경비	경비원배치 신고서, 근무일지 각1부	
구조계산	현장구조감리보고서 각 1부	

5. 작업준수사항(공통)

1) 일반작업

- ① 공사 안내문을 부스 내부에 부착 한다.
- ② 소화전과 비상구는 상시 사용 및 개방 가능 공간을 확보한다.
- ③ 전시장 바닥 황색선 안쪽으로 장치물을 설치해야 한다.

* 출입구 전면 4m이상, 좌우 및 후면은 황색선 안쪽 1.2m

* 칸막이(코엑스 시설) 구조물에서 30cm이상 거리를 두고 시공

* 기존 시설물이나 벽면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전시장 부스 배치 시 유의사항 참조)

- ④ 공사 잔존물은 전시장이나 통로등에 방치할 수 없다.
- ⑤ 코엑스로부터 전시부스설치변경을 요청받은 경우나 자체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공업체는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코엑스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이나 조건부 승인을 한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이나 조건부 승인 부분에 대한 적용 없이 그대로 시공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체에 등록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⑦ 시공업체는 행사기간 중 매일 행사 종료시간 직전에 설치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⑧ 시공업체는 주최자와 코엑스의 승인을 받은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사항

- ① 작업 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현장 내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③ 구조상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한다.
- ④ 각 연결부위는 각기 최대한 안전하게 체결하도록 한다.
- ⑤ 철거 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3) 흡연금지

- ① 전시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절대 금연)

4) 업체의 방화관리 책임

- ① 시공업체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부스 안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폐기물

- ① 공사 중 발생한 공사폐기물은 설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코엑스

쓰레기 처리장이나 기타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쓰레기봉투 구매하여 위탁 처리 가능)

- ② 전시장 내 부스 시공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그 즉시 수거하여 당일 처리 한다.

6) 전시장출입

- ① 전시장 내 모든 작업자는 전시장 출입 시 코엑스의 출입통제를 받아야 한다.
(작업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 출입)
- ② 모든 작업자는 현장대리인으로 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전시장을 출입한다.

7)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① 수주한 용역의 제공은 등록업체가 직접 수행하며 일괄 하도급 및 명의대여는 금지한다.
- ② 코엑스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6. 전시디자인설치

1) 기본 사항

- ① 부스에 사용되는 다음의 자재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두께 2mm 이상의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선방염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방염성능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 합판이나 목재(방염성능검사결과통보서 또는 방염성능검사 의뢰서/성적서 제출)
 - * 천, 커튼, 카펫, 파이텍스 방음재(선 방염 제품으로 방염성능검사결과통보서)
- ② 후방염일 경우 전문방염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 관할소방서(강남소방서)에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뢰서 접수 및 결과통보서 제출
 - * 온라인 작업 신고 시 목공 후방염(투명방염) 사유 기재
- ③ 현장에서 비방염으로 적발시 작업 중지 및 확인서 벌점 조치

- ④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투명방염은 일체 사용불가
- ⑤ 방염증빙 서류는 온라인 작업 신고 시 제출
- ⑥ 전시장내 소화전설비, 비상구, 전기 EPS출입문 및 화장실 입구는 전시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2m 이상 이격)
단, 부스 배정시 상기사항이 장애가 될 경우 행사 준비 14일전까지 코엑스와 협의 를 거쳐 승인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유사시 소화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
- ⑦ 전기톱, 전기 대패, 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및 산소 절단기는 전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단, 전시장 내 컴프레서는 단상 2kw 이하인 경우 사용이 허가되며 단상 2kw 초과 시 작업 전원을 별도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
- ⑧ 천장이 막히는 구조의 경우 자동으로 소화 가능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당 1개 이상 필수)
- ⑨ 독립부스 시공 시 H빔 기둥 하부가 (특히 복층 시공 시)트렌치커버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H빔 바닥에 트렌치커버 면적(600*600 A. C홀 기준)의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의 철판을(두께 10T 이상 철판) 설치하여야 한다.
- ⑩ 공사 시 차량등록증 재원상 최대 적재량(적재정량)이 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전시장 내부로 진입 불가 하다 (4.5~5톤 화물차의 공차 중량은 평균 10~12톤)
※차량의 중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증을 제시토록 요구할 수 있음 (홀매니저, 경비근무자)
※출고 후 차량 적재량 증량과 개조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총중량이 증가한 차량은 진입 불가
※차량등록증 제시 거부 차량의 중량 확인 시까지 전시장 내부 진입 불가
- ⑪ 누수 발생 시 원활한 조치를 위하여 급배수 사용이 있는 부스의 경우 트렌치/맨홀 상부에 목공(유리) 바닥 및 구조물 포함 시공 제한
단, 유사 시 개폐가 가능한 조립식 시공은 가능하며 작업신고 시 평면도 또는 전기도에 표기하여 신고
- ⑫ 중량물 이동 및 복층 작업 시 전시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크레인의 경우 적재정량 4.5톤 이하의 차량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전시장 내부 작업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천장공사

- ① 천장에는 배너 등 경량물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며 설치를 위해 코엑스에 설치위치 도면을 제출한 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전시장 시설운영규정 21조)

3) 시설물의 높이 제한

- ① 다음 각 홀의 높이를 초과하는 전시 부스를 전시장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홀명	Hall A	Hall C		Hall B		Hall D		로비
실명	1~4실	1~4실	2,3실 중앙부	1,2실	SS실	1,2실	SS실	-
제한높이	5m	5m	5m	5m	4m	5m	4m	3m

※ 주최자의 요청 시 부스 높이를 협의 하여 시공이 가능.

4) 복층공사

다음 각 호를 충족시키는 경우 전시 부스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① 작업신고는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포함하여 전시장 사용개시일 14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복층(2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1/2 이내로 하여야한다.
- ③ 복층부의 벽체 칸막이는 전체 벽체의 1/2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 * 복층 내부는 밀실 형태의 칸막이 구조물 설치 불가
(단, 투명재료인 경우에 한하여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나 출입문 설치는 불가)
 - * 부득이하게 출입문을 설치해야 할 경우, 잠금 장치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하부 1/3은 반투명 (혹은 불투명) 시공 가능
- ④ 복층 출입구는 넓이 0.9m 이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 ⑤ 복층계단의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⑥ 복층 천장은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
- ⑦ 계단 입구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⑧ 1층 천장이 막히는 부분은 10㎡당 1개 이상의 자동 확산소화기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 ⑨ 구조계산 자료의 내용과 시공이 상이할 경우 구조계산을 재검토하여 코엑스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⑩ 목재로만 구성된 복층 시공은 불가하며, 반드시 기둥 및 상판은 철골 구조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목재구조 진단 전문기관의 구조계산서 제출 시에는 작업승인 허용하나, 이 경우 제작도 및 제작현장 사진 첨부)
- ⑪ 공사 완료 후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서(현장 감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통로 확보

- ① 전시 부스 통로 폭은 3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설비, 전시품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비상구, EPS출입문, 소화전설비 및 화장실입구 부분에는 전시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부스배정 시 상기 사항이 장애가 될 경우 전시장 사용 개시 14일전 코엑스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수 있다.
- ④ 전시부스 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물 좌, 우 및 후 벽면으로부터 1.2m 거리를 띄워야 하며, 전시장 이동식 칸막이에서 30cm이상 떨어지게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전시장 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⑤ 각 홀별 후면 통로는 소방 피난 동선으로 일체의 화물이나 자재, 비품 등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면 소방통로 입구에 출입문 및 블라인드, 커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6) 로비 공사

- ① 전시부스는 기본조립식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부스는 코엑스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 ② 퍼티, 샌딩, 톱질 등 소음 및 분진 발생 작업 금지
- ③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설치 시 바닥 보양을 목적으로 파이텍스(카펫)를 설치하여야 하며 코엑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판 등 추가 보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④ 전시장치물 설치 시 기존 시설물 벽면으로부터 최소 30cm에서 최고 1m까지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피난유도등,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방 설비는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전면을 개방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소화전 설치 기준 참조)
- ⑤ 로비 장치물 작업신고 시 고객 지원을 위한 구조물(등록대, 현황판 등)을 제외한 독립 부스는 반드시 각 개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괄신고 불가 / 미준수 시 작업승인 불가)
- ⑥ 로비 부스 장치물 공사 시 일반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 봉, 공벽 등을 설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소음레벨은 야간 65dB, 주간 75dB를 초과할 수 없다.
- ⑦ 로비 장치물의 높이는 3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 ⑧ 모든 로비 장치물 작업은 18:00 이후 (단, 철거작업은 20:00 이후)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조치 및 공사 안내문을 설치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⑨ 로비 장치물의 자재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온라인작업신고 시 반드시 방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 제한

- ①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물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코엑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코엑스의 승인을 받은 물품 이외의 위험물을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
- ② 승인 받지 아니한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시공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다.
- ③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따라야 한다.
- ④ 전시장 내에서는 코엑스의 사전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
- ⑤ 위험물의 취급, 보관은 홀매니저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조립부스공사(트러스, 블록 및 시스템 이와 유사한 공사)

- ① 구조상 흔들림이 심할 경우에는 보강하거나 버팀대 등을 추가 설치한다.
- ② 시스템 구조물이 내부의 조명 설치로 인해 변형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구조물 이동 시 바닥이나 기존 시설물이 파손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목공사

- ① 목재의 공사는 외부에서 제작하여 전시장 내에서는 조립만 하여야 한다.
- ② 합판, MDF 등 전시구조물의 경우 내외부에 방염처리 하여야 하며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 혹은 방염성능검사의뢰서/성적서를 온라인작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샌드위치 판넬, 스티로폼은 전시장 내 반입 및 시공 절대 불가)
- ③ 시트지, 벽지, 파이텍스 시공의 경우 선방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시장 내 페인트 작업은 부분적 보수외의 경우 홀매니저의 승인 후 시행 가능하다.(수성 친환경페인트만 가능)
- ⑤ 부득이하게 전시장 내에서 목재의 부분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코엑스의 승인을 득한다.
- ⑥ 전시장 내에서는 전기톱, 대패 등 분진을 유발하는 전동공구의 사용을 금지하며, 핸디코트 등 퍼티 작업은 바닥 보양 후 가능하며 손으로 하는 샌딩(사포작업)을 할 수 없다. 단, 분진 등을 흡수할 수 있는 흡진기 장치를 부착한 공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홀매니저실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온라인작업 신고 시 메모란에 샌딩기 사용 기입)
- ⑦ 유성페인트,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은 일체 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 ⑧ 가로재의 경우 수직재나 브라켓에 얹히고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리공사

- ① 상부에 설치되는 유리나 바닥에 설치되는 유리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 강화유리로만 시공하여야 한다.
(유리에 안전유리 표시 필, 온라인작업 신고 시 강화유리필증 제출)
- ② 구조물 중에서 유리는 철거 시 시공업체가 먼저 안전하게 수거 반출하여야 한

다.

- ③ 시공업체는 철거 시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조경공사, 조형물공사

- ① 건조류, 플라스틱, 비닐류 등은 방염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물을 사용한 조경공사의 경우 물 공사에 준하여 시행한다.
- ③ 모래, 흙, 자갈 등을 사용할 경우 바닥에 보양을 철저히 시행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2) 시멘트공사

- ① 바닥에 보양을 철저히 하여 시멘트, 물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장 내에서 바닥 비빔은 절대 금지한다.(고무통, 플라스틱 통 등을 사용)
- ③ 현장 시공의 경우 건비빔하여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주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과 차단을 철저히 한 후 시공한다.
- ⑤ 시공 시 발생하는 벽돌, 블록 등 폐기물은 즉시 수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⑥ 철거할 경우 바닥에 합판과 파이텍스 등으로 보양하여 바닥을 보호하도록 한다.

13) 중량물공사

- ① 중량물 공사(5톤 이상)의 경우 공사시행 14일 전에 구조물(전시품)에 대한 제원을 홀 매니저실에 제출, 구조계산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홀매니저실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량물을 반입할 경우 중장비의 부양높이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③ 중량물을 자체적으로 운전하여 반입할 경우 최대한 서행하여 진입한다.

14) 기타

- ① 에어바운스 시공은 불가능하다.

7. 전기시설

1) 기본 사항

- ① 관련 자격증 취득한 자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② 동력간선 시공업체는 전시 참가업체별 신청용량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한다.
- ③ 분전반은 내방객의 이동통로나 밀폐된 장소를 피하여 설치한다.
- ④ 조명 및 전열설비 배선공사는 2.5mm²×3C 케이블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⑤ 할로겐 조명기구는 과열로 인해 코팅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안정기 등 점검)
- ⑤ 전시장 내 동력, 전열, 조명, 배선 Cable은 전선 허용 전류의 60% 이상으로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 ⑥ 220V 노출콘센트 설치 시 비접지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
콘센트 기구 설치 시 전시 특성상 바닥에 설치하되 내방객의 안전에 유의하여 설치 해야 한다.
- ⑦ 전시장 내 배선공사 시 전기용량, 전압, 전류 관계없이 IV전선 및 PVC 비닐 코드 선은 사용할 수 없다.
- ⑧ 전시품 작동용 모든 기기는 C.V 케이블 사용을 하여야 하며, 기기외함은 반드시 제3 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 ⑨ 전기 메인간선 시공 시 전시품 기기/조명/전열은 각각 별도의 스위치(S/W)를 설치해야 한다.
- ⑩ 부스에 공급할 메인 전원은 노퓨즈브레이커(no fuse break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⑪ 부스 내 전열 및 조명 메인전원은 누전차단기(ELB)를 설치 시공한다.
- ⑫ 전시행사 준비 시 자체시공 업체에 대하여 감리(발전차 제외)는 일체 할 수 없으며 전기 시설 등록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⑬ 간선 시공업체는 가능한 주최자가 정한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 전시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⑭ 트렌치/맨홀 커버 개폐 시 프레임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한 후 원위치 하여 흔들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⑮ 공사업체는 부스 내 24시간 전원 설치 공사 접수 시 작업신고서에 별도로 24시간 전원 사용량 및 용도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⑯ 상기 절차를 무시하여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
- ⑰ 작업 시 케이블이 통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케이블 위에 안전선이 사선으로 처리된 안전보호 덮개(고무판, 전선보호덮개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완료 후에는 트렌치커버 수평작업을 시행하고 트렌치커버 사이에 이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⑱ 간선작업 등을 위해 트렌치/맨홀 커버 개폐 시 2인이 자석으로 작업을 하여 소음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트렌치와 맨홀을 1명이 자석으로 끌어 여닫는 행위 일체 금지, 필수 준수 사항으로서 미 이행 시 확인서 별첨 부과)

2) 전시행사 시

- ① 간선 시공업체는 전시장 개문과 동시에 주최자의 승인 후 전력을 공급하고 부스별 전원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②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개문과 동시에 시공부스의 조명 및 전시동력을 확인하고 문제 되는 부분은 신속히 처리한다.
- ③ 간선 시공업체는 전시준비, 기간 및 종료 시 까지 전시장 내에 상주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전시철거 시

- ① 전시행사 종료 시 전시동력 차단 전에는 절대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철거 작업 중 램프를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행사용 자재 철거 시 기존시설물 손상여부를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홀메니저와 사후조치를 협의한다.
- ④ 행사장 내 트렌치를 정리하고 홀 캡은 반드시 원위치 시켜야 한다.

- ⑤ 철거 시에 잔재물이 남아 있을 경우 장치업체와 관계된 업체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8. 카펫 / 파이텍스

- ① 카펫 시공으로 인하여 들뜸이나 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한다.
- ② 보양비닐이나 테이프는 반드시 해당 전시회 오픈 또는 철거 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 ③ 카펫, 파이텍스, 타일카펫 등은 선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방염 제품 시공 시에는 작업 중단 및 현장에서 즉시 반출/확인서 별점 부과)
- ④ 테이프사용은 바닥에 끈끈이가 남지 않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포장용 박스테이프, 투명테이프 등 끈끈이 자국이 남는 테이프 사용 불가)
- ⑤ 철거 후 공사 잔존물을 전시장내에 방치할 수 없다.

9. 급배수, 압축공기, 물 공사

1) 기본 사항

- ① 급수배관 및 압축공기용 모든 배관 자재는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상용 압력의 2배 이상의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규격 외 자재 사용 시 확인서 별점 부과)
- ② 시공자는 급배수, 압축공기 전시장 실별 맨홀위치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한다.
- ③ 고압호스 연결 시 호스니플 및 호스밴드는 (서스 밴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밴드 조임 시 수작업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깔깔이렌치, 복스렌치, 전동 드라이버 사용 금지)
- ④ 배관 및 호스 등 접속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누설(漏泄) 검사를 실시한다.
- ⑤ 배수관은 가능한 짧게 시공하고 배관 내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 ⑥ 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에 퇴수밸브를 설치하여 급수를 퇴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한다.
- ⑦ 배관은 원칙적으로 트렌치 내부로 매립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립부 중간에는 반드시 점검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이음매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⑧ 중간밸브는 비상 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거나 점검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⑨ 에어/급수 호스와 전시품 기기 연결은 원터치 Connector로 사용해야 한다.
- ⑩ 참가업체 및 카페테리어 부스 내에 급배수 설비 공사를 시행할 시 1차로 바닥을 방수포(시트), 비닐(0.2mm이상) 등으로 2중 보양하여야 한다.
- ⑪ 급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모든 장비의 배수관은 해당 장비와 1:1로 체결하여야 하고, 급배수라인 중간연결 T(Y)관 이음을 일체 금지하며, 모든 급배수 설비 공사는 반드시 급배수 시공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 호스 인입관 덮개는 테이프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 배수관에서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⑫ 공사 완료 후 급수 공급 전에 현장 누수여부 등 시공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급수 공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⑬ 급배수 시공자재 이외에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흡착포 및 물 흡수 청소기를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 ⑭ 공(유리)바닥이 설치 된 부스는 급배수 설치가 불가하다. 단, 맨홀 및 트렌치를 유사시 개방 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반드시 해당부스 디자인설치업체와 협의하고 홀매니저실에 이상 유무 통보 (전시디자인설치업종 기본 사항 ⑩항목 참조)

2) 전시행사 시

- ① 시공업체는 개문과 동시에 급배수/압축공기 사용 부스에 누설(漏泄) 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주최자의 승인에 따라 물과 공기를 공급한다.
- ② 시공업체는 행사기간 중 매일 행사 종료시간 직전에 설치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③ 시공자는 전시기간 중 매일 전시 종료 시에 필히 중간밸브를 닫은 후 퇴실해야 한다.
- ④ 누수사고 시에 시공업체는 신속하게 흡착포를 사용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현장에 차단봉을 설치하여 일반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빠른 후속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전시철거 시

- ① 급수를 차단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배수관 내에 물은 퇴수 조치한다.
- ② 배관 내 잔존물로 인해 전시장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 ③ 행사 종료 후 급배수 시공업체는 참가업체가 임의로 호수를 절단,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트렌치 내부에 물을 버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행사가 종료되면 급배수 시공업체는 각 홀별 전담직원을 철거 현장에 사전 배치, 급배수 사용업체 장비와 급배수 공급호스 라인 차단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참가업체가 임의로 호수를 절단하여 발생하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경비

1) 근무요령

- ① 전시 준비기간 중에는 화재,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고 출입자를 관리한다.
- ② 전시 준비, 개최, 철거 기간 중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 시설물 손상, 안전사고 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주최자 및 홀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③ 5톤 이상의 중량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제한된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홀매니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 ④ 근무일지는 다음 날 09:00시까지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시준비 공사 전 근무자 배치신고서를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전시 개최기간 중에는 관람객의 질서를 유지하고, 친절한 안내 자세로 근무에 임한다.
- ⑦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시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⑧ 주차관리실과 협조하여 입·반출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장을 통제 관리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① 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도착 후 아래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며 사고자의 인적 사항과 사고내용, 시간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록한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즉시 홀매니저에 보고)

* 경미한 사고: 사고현장에 도착 의무실(6000-1119)로 수행 안내

* 중상 사고: 사고현장에 도착 119구급차나 병원 구급차를 요청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 시 관계자 동행토록 조치한다.)

***절차**

응급상황 발생 현장 도착 / 확인 → 주최자/홀매니저 상황 보고	
경미한 사고 (거동 가능)	중상 사고 (거동 불가 등)
↓	↓
의무실로 수행 안내	119구급차 / 병원구급차 요청 ※구급차 대기 중 초동조치 *의무실(6000-0119) 호출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의무실, 안전상황실, 전시컨벤션지원센터(2층)
↓	↓
종료 보고 (홀매니저) ※ 귀가 조치 등	구급차 이송 시 (주최자 동행 조치) ※미동행시 보호자 연락처 확보
	↓
	종료 보고 (홀매니저) ※병원응급처치 등

- ② E/L, E/S 고장 시: 승강기감시반(6000-1247~8)에 발견 즉시 신고하여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 ③ 화재 및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선 조치하고 상황을 전시주최자와 홀매니저에게 알려야 한다.
(신속하게 초기 대응 및 진압)
- ④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및 내방객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11. 철거

- ① 집게차량을 이용 목재 구조물 해체 시 바닥 충격에 유의하여 보양 후 해체작업을 한다.
- ② 전시장 내부에 철거업체 1개 업체 당 각 1대의 집게차량만 전시장 내부 진입이 허용되며, 진입 후 아웃트리거, 바퀴축 등을 모두 바닥에 접지 차량 하중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또한 집게 차량의 아웃트리거 하부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보강판(두께 5cm 고무판 보강)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기준 위반 시에는 즉시 작업 중지 및 벌점 발부)
- ③ 유리, 모래, 흙, 부스러기 등을 철거할 경우 바닥을 보양하고 시행한다.
- ④ 철거 시에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1차로 집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한 후 인력을 이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⑥ 철거 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⑦ 철거 작업 시 집게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분진, 소음, 매연 등의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2. 지게차

- ① 전시물품 운송에 있어 코엑스 운영규정 제30조(중량전시품 반입제한)에 의거 전시장 내 반입 시 1.5톤 이상 전시품에 대하여 사전 코엑스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 ② 5ton 이상 지게차의 전시장 진입 시 홀매니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무자격자 운전 및 지게차 대여 절대 금지
- ④ 과속 금지(전시장 및 연결통로 제한속도 5km/h, 하역장 제한속도 10km/h 준수)
- ⑤ 전시품 운송 시에는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 충전식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디젤 지게차를 운행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홀매니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운행 차량의 연료는 반드시 요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리깅

- ① 포인트 호이스트(리깅) 작업 시에는 1point당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사전에 구조 계산서를 코엑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포인트 호이스트(리깅)에 매달리는 트러스 재질은 원칙적으로 알루미늄 소재 계열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트러스에 라이트 및 무빙라이트 등 액세서리를 부착할 때에도 고정 볼트 외에 안전 고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중으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포인트 호이스트(리깅)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하단에서 일체의 다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안전요원(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한다.
- ⑤ 트러스 등 구조물 작동에 필요한 전기공사는 코엑스에 등록된 전기업체를 통해 시공하여야 한다.
- ⑥ 홀별 포인트 호이스트(리깅) 설치 현황 : 상세 위치는 코엑스 홈페이지 전시장 평면도 참조

홀 별	리깅 설치 수량	중량하중/1기당
A홀	12EA(1기당 4point)	500kg(125kg/1 point)
C홀	12EA(1기당 4point)	600kg(150kg/1 point)

14. 광고사인물

- ① 천장배너 작업 시 전시장 내 진입 가능한 스카이 차량의 중량은 적재정량 3.5톤 이하 차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작업 시 안전모는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리프트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작업 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로비 등 공용공간에는 X배너를 설치할 수 없다.
- ⑤ 전시장 내부 배너 작업 시 벽면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피난유도등, 소화전 등은 반드시 노출 시공 하여야 하며 하부 유도등 위치부터 1m이상 상부에 마감 설치 하여야 한다.
- ⑥ 각 홀별 천장배너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된 자재 및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한다.(천장 철망 마감재, H빔, 기둥에 배너 거치 행위 일체 금지 (위반 시 배너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하며 벌점 부과)
- ⑦ 행사 종료 후 전시장 내부, 기둥 등에 설치한 사인물은 행사 종료 당일에 수거 및 철거하여야 한다.
- ⑧ 코엑스 직접 주최 행사를 제외한 기타 주최자 행사 사인물 제작 시 코엑스 CI (coex)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순 COEX 글자 표기 가능)
- ⑨ A, C홀은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구비품

- ① 행사 준비일 가구비품 업체의 비품 차량 전시장 내 입고 가능 시간은 주최자가 선정한 official 업체의 경우 준비 1일차 13:00 이후부터 가능하며(그 외 일반 업체는 준비공사 마지막 날 오후 13:00부터 진입) 사전에 반드시 홀매니저실의 승인 받은 장소에만 적재하여야 한다.
단, 가구비품의 적재 장소가 전시장 내부 주최자 임대 공간 내의 경우 시간을 조정 시행 할 수 있다. (지정시간 미준수 시 확인서 벌점 부과)
- ② 비품 등을 연결통로, 로딩덕, 화물출입구 비상대피로 등에 무단방치, 적재해서는 안 된다.
- ③ 비품 등 렌탈 품목은 사전 예약을 통하여 수량 등을 확보 입고하여야 하며, 작업 현

장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16. 구조계산

- ① 복층, 높이 5m를 초과하는 부스, 길이 9m이상 트러스(LED 스크린 포함), 5톤 이상 중량물 반입 및 공사, 무대 등 전시장치와 리깅 등 구조검토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14일전까지 구조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조계산 자료의 내용과 시공이 상이할 경우 구조계산을 재검토하여 코엑스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구조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 구조계산서에는 설치위치의 정확한 문구 또는 도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 * 시공도를 별도 작성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방서를 포함해야 한다.
 - * 계산서에는 구조물 반입 및 출입, 설치 시 이동 및 충격하중을 표기해야 한다.
 - * 반입장비의 사양과 구조계산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 시공담당 현장대리인 및 구조물 시공자는 적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작업현장에서 승인된 구조계산의 내역과 상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및 행사오픈 전까지 감리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전시디자인설치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현장대리인 미상주	확인서	1점
2	작업 부스 내 공사안내문 미부착	확인서	1점
3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현장대리인 포함 부스 내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4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바닥, 벽면, 천정, 기둥 등 훼손)	확인서	2점
5	작업자 사포질(연마)로 인한 분진 발생, 바닥 도배지 등 마감재 미 제거 흡진이 불량한 흡진기 사용 (가루 날리거나 바닥으로 떨어짐)	확인서	1점
6	소방시설 관련 법규 위반(소화전 폐쇄 시공, 확산소화기 미설치)	확인서	1점
7	작업신고서 미승인 공사	확인서	1점
8	전시장 내 전동기구(전기톱, 그라인더, 대패 등) 무단 사용	확인서	1점
9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폐기물) 방치	확인서	1점
10	자재 무단 적치 (전시장 통로, 비상피난통로, 화물출입구, 하역장 등)	확인서	2점
11	전시 종료 후 유리 미철거 및 현장에서 파손	확인서	1점
12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13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서 미제출(복층, 리깅 등)	확인서	2점
14	비방염 자재 사용 및 시공	확인서	3점
15	기한 내 부스 미 철거	확인서	2점
16	신나, 유성페인트 등 위험물 반입 및 토치, 용접작업등 전시장 내 위험물을 수반한 작업을 시행	확인서	2점
17	장치물 높이 등 도면신고 내용과 시공이 상이한 경우	확인서	2점

18	페인트 시공 후 잔여물 방치 / 오염발생	확인서	2점
19	복층시공 등 H빔 기둥 하부 규격 보강재(베이스판) 미설치 (베이스판 철판두께 10T이상)	확인서	2점
20	급배수가 있는 부스 트렌치/맨홀 상부 목공(블럭)구조물 시공 (특히, 마루 시공 유의 /유사 시 개방이 가능한 조립식 시공은 가능)	확인서	2점
21	안전사고 발생 (2주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 단, 2주미만의 경우 경상 1점)	경고	3점
22	부스공사 미완료(공사 중단)로 인한 참가업체 행사 지장 초래	경고	3점
23	등록업체 과실로 인한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전시장 내부 누수사고 포함) 전시구조물 붕괴, 인적·물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행사중단 등 행사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2년간 등록 제한)	출입정지 ~ 등록제한	4점
24	명의대여(3년 간 등록 제한)	-	등록취소
25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전기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 점수
1	현장대리인 미상주	확인서	1점
2	작업신고서 미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점
3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현장대리인 포함 부스 내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4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전시장바닥, 트렌치 훼손 등)	확인서	2점
5	행사 종료일 입실 지정 시간 전에 전시장에 입실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서	1점
6	조명(램프) 파손 방치	확인서	1점
7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8	바닥면에 전선 노출 시 안전 보호덮개 미설치 (상부 면에 안전보호색을 사선으로 표기한 안전보호 덮개/ 고무판, 엘로우자켓 등)	확인서	1점
9	자재 불법적치(전시장 화물출입구, 로딩덕, 비상피난통로 등)	확인서	2점
10	작업 시 트렌치(맨홀) 커버 원상복구 미 시행 또는 코엑스물 입점 업체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작업 시 2인 1조로 좌우에서 자석을 사용하여 개폐 트렌치(맨홀) 끄는 행위 일체 금지	확인서	1점
11	안전사고 발생 (누전사고, 경미한 화재발생, 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12	발주업체가 코엑스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수주한 경우(단, 자체시공부스로 승인된 업체 제외)	경고	3점
13	등록업체 과실로 인한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전시장 내부 누수, 화재 사고 포함) 전지구조물 붕괴 인적·물적 손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행사중단 등 행사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2년간 등록 제한)	출입정지 ~ 등록제한	4점
14	명의대여(즉시 등록취소 및 3년 간 등록 제한)	-	등록취소
15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카펫/파이텍스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2	흔적(끈끈이)이 남는 테이프 시공	확인서	2점
3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현장대리인 포함 부스 내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4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확인서	2점
5	행사 종료일 입실 지정 시간 전에 전시장에 입실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서	1점
6	공사 잔여물(카펫/파이텍스) 방치	확인서	1점
7	자재 불법 적치 (전시장 통로, 로딩터, 비상피난통로 등)	확인서	1점
8	안전사고 발생 (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9	비방염 자재 시공	경고	3점
10	발주업체가 코엑스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수주한 경우 (단, 자체시공부스로 승인된 업체 제외)	경고	3점
11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및 물질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물질적 피해를 동반하는 전시장 내부 누수 사고 등, 2년간 등록 제한)	출입정지~ 등록제한	4점
12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사항 세부 기준 : 급배수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 점수
1	현장대리인 미상주	확인서	1점
2	작업신고서 미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및 현장 추가건 미신고 포함)	확인서	1점
3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현장대리인 포함 부스 내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4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급배수, 압축공기 배관 등)	확인서	2점
5	트렌치 캡 원상복구 미시행	확인서	1점
6	행사 종료일 입실 지정 시간 전에 전시장에 입실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서	1점
7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8	급배수 공사 시 배수관 Y(T)관사용 및 방수포 미설치	확인서	1점
9	급배수/압축공기 호스 등 규격 외 자재 사용	확인서	2점
10	급배수 작업 시 트렌치(맨홀)커버 원상복구 미시행 또는 코엑스몰 입점 업체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작업 시 2인 1조로 좌우에서 자석을 사용하여 개폐 트렌치(맨홀) 끄는 행위 일체 금지	확인서	2점
11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안전사고 발생 (물적 피해가 경미한 누수 사고 포함)	확인서	2점
12	트렌치/맨홀 상부 목공(유리) 구조물이 설치된 부스 급배수 시공 (디자인설치업체와 협의, 흠매니저 승인 필수)	확인서	2점
13	안전사고 발생(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14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및 물질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를 동반하는 전시장 내부 누수사고 등, 2년간 등록 제한)	출입정지~등록제한	4점
15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사항 세부 기준 : 철거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 점수
1	작업자 안전모 등 보호 장비 미착용	확인서	1점
2	철거작업 시 집게차 지정대수 이상 전시장 내 진입(기준 : 철거 업체 1개 업체당 집게차 1대)	확인서	1점
3	집게차 사용 시 아우트리거 바닥 보강재(패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시행	확인서	2점
4	기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바닥, 벽면, 천정, 기둥 등 시설물 훼손)	확인서	2점
5	안전교육 및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6	잔여물(도배지, 출력물 등) 방치	확인서	1점
7	철거 지연, 민원 발생	확인서	2점
8	안전사고 발생(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9	폐기물 불법 처리	출입정지	5점
10	철거가 이유 없이 중단될 경우	경고	3점
11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및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전시장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등) 또는 인적, 물적 손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출입정지 ~ 등록제한	4점
12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지게차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 점수
1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2	지정 장소 외 주차 및 지정대수 위반(1층, 3층 로딩덕 내 승인 대수 준수)	확인서	1점
3	과다한 비용 청구로 인한 민원 발생	확인서	1점
4	지게차 과다적재로 인한 운전자 시야 미확보 운행	경고	3점
5	포크가 바닥에서 30cm 이상 이격하여 운행(중장비 면허 시험 기 준)	확인서	1점
6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 물 파손 (바닥, 벽면, 천정, 기둥 등 시설물 훼손)	확인서	2점
7	전시장 승인 없이 5톤 이상 지게차 반입	확인서	2점
8	무자격자 운전, 지게차 대여	경고	3점
9	제한 속도 초과 운행(전시장 내부 5km/h, 하역장 10km/h)	확인서	1점
10	안전사고 발생 (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11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전시구조물 파손 등) 및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전시장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등) 또는 인적, 물적 손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출입정지 ~ 등록제한	4점
12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관련법,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경고	1~3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리깅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현장대리인 포함 부스 내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2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바닥, 천정 등 시설물 훼손)	확인서	2점
3	작업신고서 미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점
3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4	구조계산서 미 제출	경고	3점
5	안전사고 발생 (2주 이상의 임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6	등록업체 과실로 인한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리깅 구조물 낙하사고, 인적·물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안전 사고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전시장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포함)	출입정지 ~ 등록제한	4점
7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사항 세부 기준 : 광고사인물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 점수
1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현장대리인 포함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2	작업신고서 미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점
3	시공 시 리프트카를 사용하지 않고 사다리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확인서	1점
4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5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벽면, 천정 등 시설물 훼손)	확인서	2점
6	행사 종료 후 배너 등 사인물 미 철거	확인서	1점
7	지정 장소 외 사인물 시공	확인서	1점
8	공용부분 지정 시간(18시 이후) 미 준수	확인서	1점
9	전시장 벽면 부착 등 불법 시공(타카, 핀, 테이프 사용, B홀 배너걸이 외 시공 등)	확인서	1~2점
10	안전사고 발생(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11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전시구조물 파손 등) 및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전시장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등) 또는 인적, 물적 손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출입정지~ 등록제한	4점
12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조립식목공패널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현장대리인 포함 부스 내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2	작업신고서 미제출 시공(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확인서	1점
3	바닥 미 보양 페인트 작업	확인서	1점
4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5	페인트 시공 후 잔여물 방치(방치1점, 이로 인한 오염발생 2점)	확인서	2점
6	적정 인원 미 투입으로 인한 철거 지연, 민원 발생	확인서	1점
7	자재 불법 적치(화물출입구, 통로, 로딩덕, 비상 피난통로 등)	확인서	2점
8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벽면, 천정 등 시설물 훼손)	확인서	1~2점
9	안전사고 발생(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10	등록업체 과실로 인하여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및 전 시구조물붕괴 (부스 패널 등)등 인적, 물질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전시장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포함)	출입정지~ 등록제한	4점
11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가구비품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 점수
1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2	행사 종료 후 가구비품 미회수(폐자재 포함)	확인서	1점
3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벽면, 천정 등 시설물 훼손)	확인서	2점
4	안전모 미착용(전시장 내 모든 작업자)	확인서	1점
5	비품, 자재 불법 적치(전시장 화물출입구, 통로, 로딩덕, 비상피난통로 등)	확인서	2점
6	행사 종료일 입실 지정시간 전에 전시장에 입실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서	1점
7	안전사고 발생 (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8	행사 종료 후 가구비품 미회수 및 폐가구 자재 등 무단 투기 행위 적발 시	경고	3점
9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및 물질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를 동반하는 전시장 내부 누수사고 등)	출입정지 ~등록제한	4점
10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운수통관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2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일 내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전시장 시설물 파손 (벽면, 천정 등 시설물 훼손)	확인서	2점
3	안전모 미착용 (모든 작업자 착용)	확인서	1점
4	비품, 자재 불법 적치 (전시장 화물출입구, 통로, 로딩덕, 비상피난통로 등)	확인서	2점
5	보세전시장 운영 관련 규정 위반	확인서	2점
6	안전사고 발생 (2주 이상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 발생 등. 단, 2주 미만의 경우 1점)	경고	3점
7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전시구조물 파손 등) 및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전시장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등) 또는 인적, 물적 손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출입정지~등록제한	4점
8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경비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2	전시장 근무일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	확인서	1점
3	전시장 내부 및 로딩덕 등에서 발생한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	1점
4	경비 근무자의 과실로 인하여 주최자, 등록업체, 참가업체 또는 참관객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확인서	1점
5	경비 근무자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확인서	1점
6	전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배치 인원 미 준수 및 배치 신고한 인원보다 실제 근무한 인원이 적은 경우	경고	3점
7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안전관리 위반 세부 기준 : 구조계산

No	위반내용	조치	위반점수
1	안전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불참	확인서	각 회당 1점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조계산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1점
3	행사오전까지 감리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1점
4	기타 상기 위반내용 외 운영규정, 운영매뉴얼 등 위반	확인서	1점
5	등록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행사 중단 등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전시구조물 파손 등) 및 코엑스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전시장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누수 사고 등) 또는 인적, 물적 손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출입정지~ 등록제한	4점